

『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제16조 및 제21조에 의거 구미시 관내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(GIS)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리정보시스템 구축·관리 및 운영 방안 수립(안 제4조 내지 제11조)
 - 지리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
 -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수립 및 체계적 인력관리 방안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지정
- 공동협의회 구성(안 제12조 내지 제15조)
 -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구성·운영
- 지리정보제공 및 이용 절차 규정(안 제16조 내지 제18조)
 -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자료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 후 이용가능(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은 사용료 면제)

- 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(안 제19조)
 -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보안관리를 「구미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」에 따라 만전을 기한다.

4. 참고사항

-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관내 도시기반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(GIS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주요 내용은
 - 시스템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는 지리정보 계획수립 및 시행, 시스템 구축, 주전산기를 관리하고, 현업부서는 지리정보의 수정 등 자료의 갱신 및 단말기의 관리·보수
 - 지리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·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성
 -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해 구미시지리정보 체계공동협의회를 구성·운영
 - 지리정보의 제공 등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- 다만, 안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리정보자료의 제공·신청시는 용도의 공공성 또는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 등을 적극 검토 판단 하여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,

- 전담부서의 장은 평소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및 보안규정에 따른 지도 감독 강화가 필요함.
-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물의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